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 정 2022.04.27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테라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과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구분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. 운용보수는 운용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나. 판매회사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
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

-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2. 수수료 :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,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,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(성과수수료 포함)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기준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수수료는 운용 및 계약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절차) ①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,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(이하 "기본수수료") 외에 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(이하 "성과수수료")를 추가로 받거나, 성과수수료만을 받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

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.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가.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(이하 이 조에서 "기준지표등"이라 한다)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
나. 운용성과(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
다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
라.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제7조(공시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설명의무)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일 이후부터 적용한다.